관리번호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

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
QR코드

매도인	성명(법인명)				샕 년월일(법인 · 외국인등록번			국적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				 거래 지분 (분 비율 분의)
	전화번호				휴대전화번호					
매수인	성명(법인명)				샣 년월일(법인 • 외국인등록번			국적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				거래 지분 (년 비율 분의)
	전화번호				휴대전화번호					
개업 공인중개사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법인・외국인등록번호)					
	전화번호				휴대전화번호					
	상호				등록번호					
	사무소 소재지									
거래대상	종류	[]토지 []건축물() []토지 및 건축물()								
		[]공급계약	약 []전	매	[]분양권 []입주 []준공전 []준공혹 권 []임대주택 분양전환					
	소재지/지목 /면적	소재지								
		지목			m² (거래지분 분의)		
		대지권비율)	m² (건축물 (: 거래지 :	^분 분의)	
	계약대상 면적	토지		m²	건축물	m²				
	물건별 거래가격	거래금액			원					
		공급계약 또는 전매	공급가격	년 원	발코니등	옵션비용 원	추기	사기불액		원
총 실제 거래가격 (전체)	합계	합계 계약금		원 계약체결		일				
		중도금			원	중도금 지급일				
	원	잔금			원	잔금 지급일				
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								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

직인

※ 유의사항

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. 소 유권을 이전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고, 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